

소하천구역의 결정(변경·폐지) 및 소하천예정지의 지정 (변경·폐지) 및 지형도면 고시(안) 주민공고공람

○소하천구역의 결정(변경·폐지)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3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·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 결정(변경·폐지)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를 할 예정이며, 「소하천정비법」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소하천예정지의 지정(변경·폐지)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·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(변경·폐지)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를 할 예정이며, 「소하천정비법」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7월 18일

성 주 군



1. 개요

- 가. 계 획 명 : 성주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(변경)
- 나. 위 치 : 성주군 관내 일원
- 다. 계획시행자 : 성주군
- 라. 계획의 규모 : 성주군 관내 소하천 126개소(L=276.90km)

2. 공람내용

가. 공람기간 : 2019년 7월 18일 ~ 2019년 8월 1일(14일간)

나. 공람장소 : 성주군 안전건설과, 성주읍사무소, 선남면사무소, 용암면사무소, 수륜면사무소, 가천면사무소, 금수면사무소, 대가면사무소, 벽진면사무소, 초전면사무소, 월항면사무소

3. 주민의견 청취

가. 목 적 : 소하천정비종합계획(재)수립 계획시행으로 인한 주민생활 환경 및 재산상의 이해관계 해소 및 합리적인 민원해소를 위한 의견 청취

나. 주요내용 : 성주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(변경)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(안) 및 소하천예정지의 지정(안)

다. 관계도서 : 소하천구역 결정(안) 및 소하천예정지 지정(안) 지적도(지형도면) 및 토지세목 조서

라. 제출방법 : 서면제출(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기재)

마. 제출장소 : 성주군 안전건설과, 각 읍·면사무소

4. 기타사항

가. 관계도서는 게재를 생략하며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

다. 기타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안전건설과(☎ 054-930-669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붙임 : 주민의견 제출서(서식) 1부. 끝.